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가. 제안이유

마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도시농업위원회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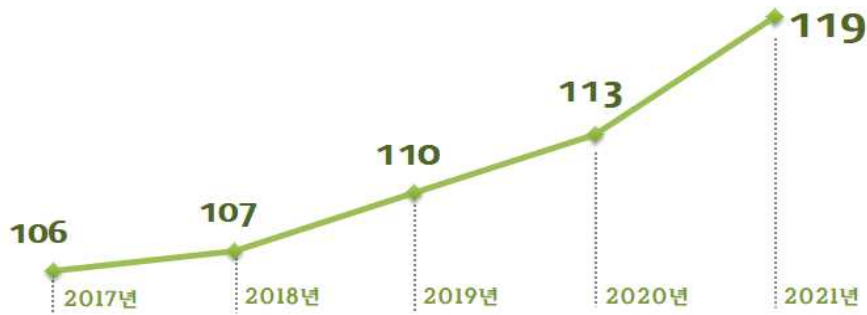
- 1)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기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제명 명시
(안 제3조제2항)
- 2)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명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 제4조제2항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구민에게 공고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에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있어 계획 변경시마다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7조제1항은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사료됨. 또한, 같은 조 제2항중 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부구청장’에서 ‘도시농업업무 소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 안 제7조제4항과 안 제9조제1항, 안제10조는 기존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각종 위원회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의 지속적인 정비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연도별 현황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관계법령】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7. 2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0호]

제2장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제3조(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오염의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텃밭의 안전성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텃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텃밭농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텃밭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의 잔류 수준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상태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그 밖에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성 점검 조사시료 채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사용한 농자재의 회수 및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사용된 농자재 용기, 오염된 흙, 부산물 등을 도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의 교류 등)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